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장 애 인 등 에 대 한 특 수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시행)됨.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도중복 장애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하향 조정에 대비한 교원 배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위탁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 위탁 시 매 학년도 시작 10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 개선(안 제4조)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신설(안 제10조 관련 별표)
- 다. 일반학교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
교육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
집과 동일한 요건 적용(안 제15조)
- 마.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 기준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
- 바.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정비(안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7. ~ 6.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하거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두어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단서 중 “운영현황 및”을 “운영현황,”으로, “분포”를 “분포 및 별표 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으로,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인력을”을 “지원인력을”로, “보조인력 수급”을 “지원인력 수급”으로, “보조인력의 채용·배치”를 “지원인력의 채용·배치”로,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인력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조인력”을 각각 “지원인력”으로 한다.

별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지니면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장애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지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교육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사람(단,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함께 지니고 다른 장애가 없는 경우는 제외)

나.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함께 수반되어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시각이나 청각에 의한 교육 지원만으로는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u>위하여</u>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교육) ① ----- ----- ----- ----- <u>위하</u> <u>여</u>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생략)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 ----- ----- ----- ----- ----- <u>하거나</u> <u>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지원하</u> <u>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u> <u>두어야</u> ---.

③ (생 략)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운영현황, -----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분포 및 별표 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50퍼센트-----

제25조(지원인력) ① -----

지원인력을 -----

----- 지원인력 수급-----

----- 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 지원인력의 운영-----

② ----- 지원인

력-----

③ 지원인력-----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63